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73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이성운
이병진 · 김원이 · 신정훈
맹성규 · 안도걸 · 박수현
조인철 · 이개호 · 정을호
문금주 · 문대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여성농어업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3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인 경우가 약 37%에 달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여성이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 하도록 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강 검진이 필요한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보호와 질환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 3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 ----- ----- ----- ----- ----- ----- ----- <u>. 이 경우 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